

## 日帝下 慣習的인 山林利用權의 解體過程<sup>1\*</sup>

裊 在 洙<sup>2</sup>

### A Study on the Dissolving Process around the Customary Common Right to Forest Utilization in Korea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sup>1\*</sup>

Jae Soo Bae<sup>2</sup>

####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오래전부터 인정되어온 山下主民들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이 일제하 산림소유권의 재편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村落共有林이나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는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總有와 特殊地役權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적용되는 산림을 村落共有林 및 特殊地役林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森林法(1908), 森林令(1911), 朝鮮林野調查事業(1917~1924) 및 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1926~1934)을 거치면서 그 권리가 私有 또는 公有로 전환·해체되었다. 특히, 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의 결과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소유권과 이용형태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했다. 즉, 소유권이 共有(緣故 포함)에서 私有 또는 公有로 전환되었고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핵심내용인 집합체로서의 공동이용권이 해체된 것이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dissolving process around the customary common right to forest utilization through a series of policies consolidating the modern forest ownerships in Korea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The existence of the customary common right to forest utilization has been widely recognized since the old time. Common profitable actions in a certain area have been given to village residents to gain useful materials such as forage, timber, fuelwood, wild animals, soil, grazing, and quarry in forest, which were necessarily required for their own daily life as customary commodities. This right was divided into the right around common forests and special easement in forests. Therefore, the common forests applicable of these rights were classified into village common forests and special easement forests. Especially, General-Government granted the national forests in pre-emption to a private(88.6%, 2,463,555chungbo) or public(12.1%, 299,050chungbo). After all, most of the common forests were transferred into national forests in earlier stage and then later into public or private forests by Japanese Imperialism.

*Key words* : common right in forest utilization, special easement, village common forest

<sup>1</sup> 接受 1998年 3月 30日 Received on March 30, 1998.

<sup>2</sup> 林業研究院 Forestry Research Institute, Seoul, Korea.

\*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96신진연구인력 연구장려금에 의해 이루어졌음.

서 론

1996년 현재 한국의 소유별 산림면적을 보면, 국유림 21.7%, 사유림 70.8%, 공유림 7.5%로 사유림중심의 소유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체 산림면적의 70.8%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산주 1인당 평균 2.4ha, 1필지당 평균 1.8ha, 5ha미만의 사유림소유자가 전체 사유림의 89.8%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sup>1)</sup>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영세한 사유림소유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른 산업과 달리 토지의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임업의 경우 영세한 사유림소유구조는 임업경영의 근본적인 제약으로 여겨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림은 임지와 임목의 결합체로서 토지자원과 목재자원의 공급처로서 기능하며, 나아가 살아있는 산림생태계가 유지됨으로써 여러 공익적 기능을 함께 발휘하는 재생가능한 생물자원이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산림은 다른 자원과 달리 소유권을 달리하는 국, 공, 사유림을 전국산림계획이라는 큰 틀로 묶어 다양한 기능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택지, 농지와 같은 토지자원과 달리 국유, 공유, 사유로 복잡하게 구분된 산림소유구조는 통일된 정책 목표를 실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결과로서의 우리나라 산림소유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영세한 산림소유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을까? 이러한 산림소유구조는 언제부터 형성되었으며 어떤 경로를 따라 변화하였을까? 이 문제제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權寧旭(1965)에 의해 비로소 일제하 산림소유권의 재편과정과 성격구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 김성호 등(1990), 신용하(1990), 姜英心(1983, 1998) 등이 이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토지수탈론이라는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일제의 식민지 한국산림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조선총독부가 마음대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국유림을 조선인의 관습과 정서를 무시한 채 대규모로 창출하고자 했던 林野整理事業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연구자들은 일제하 산림소유권의 재편과정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인 조선시대의 산림소유권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소홀하였고 나아가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이 일제하 일련의 임야정리사업을 통해 어떻게 처분·해체되었는가를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일제하 산림소유권의 변천은 곧 촌락단위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이 국유로 편입되거나 사유로 전환되어, 그 권리가 해체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는 측면을 주목한다면 오랜 기간 이어내려온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이 일제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산림소유구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먼저 고려시대 이후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법적 실체와 조선후기의 산림소유구조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일제하 일련의 임야정리과정중 소유권 변동의 중요 대상이 되었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해체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본 론

1. 우리나라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변천과정

1)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용어 정의 및 변천과정

먼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소위 舊民法에서 규정한 共有의 성질을 갖는 入會權<sup>2)</sup>과 共有의 성질을 갖지 않는 入會權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한개의 촌락 또는 수개 촌락의 공동소유산림에서 山下主民들이 집합체로써 관습적인 산림이용을 해온 權利는 현재 物權의 所有權중 總有(Gesamteigentum, 제275조)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그 總有의 성질을 갖는 산림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村落共有林'을 선정하였다. 또한 '共有의 성질을 갖지 않는 入會權(舊民法 제294조)은 현 민법의 特殊地役權(新民法 제302조)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자 한다. 즉,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이란 조선시

2)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가지 점에서 '入會權'이란 用語를 문헌상의 인용이 아닌 곳에서는 總有(村落共有林)와 特殊地役權(特殊地役林)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入會權이란 용어가 현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日本式 用語이며, 두번째로, 우리나라 民法상 분명히 '總有'와 '特殊地役權'이라는 권리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이 入會權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1) 산림청, 1997, 임업통계연보.

<표 1> 관습적인 산림이용권 명칭 및 내용의 변천

시 대 명 칭	내 용	법적근거	주 요 어
고려시대 ?	採樵, 放牧, 狩獵, 漁獵을 할 수 있는 권리	高麗史	山林川澤與民共之
조선시대 ?	採樵, 放牧, 狩獵을 할 수 있는 권리	經國大典	山場柴草勿令私占
일제시대 入會權	森林副産物 採取, 放牧을 할 수 있는 권리 總有, 特殊地役權적 入會權	森林令 舊民法	入會慣行
현 재 總有 特殊地役權	정관규약에 따름 초목, 야생동물, 토사채취, 방목 및 기타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	民法	慣習法

대까지 오랫동안 다른 村落所有의 山林이나 奧地 國有林에서 慣習的으로 山林을 利用하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慣習的인 山林利用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동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간략한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산하지역민들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고려시대 이후 法令을 통해서도 오랜기간 인정받아 왔던 것이다<sup>3)</sup>. 물론 중국의 周나라시대의 임지제도와 산림이용의 원칙으로 여겨지는 山林川澤與民共之<sup>4)</sup>라는 山林共有思想은 고려시대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체계적이고 물리적인 강제력을 지닌 法令에서 규정한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시대 이후 현재까지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주체는 촌락(또는 산하지역민)이며 내용은 촌락공유림 및 인접 산림에서 採樵, 放牧, 狩獵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표현하는 山林川澤與民共之(利)라는 의미는 “人民이 누구의 所有에도 속하지 않는 山林川澤에서 그 생활의 보충을 위하여 柴草를 채취하고 放牧을 하는 것은 그들의 權利로서 보장되어 있으며 어느 개인이나 특정인에게 한한지 않고 그 지방의 人民이 때를 정하여 共同으로 利用하는 것”(안동섭, 1960, p.36)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조선후기 산림사점이 진

행되고 촌락공유림이 형성되면서부터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山林川澤” 뿐만 아니라 村落共有林에서도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이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山場柴草勿令私占의 의미에 대해서는, “占有의 개념을 털어 이해의 구별을 구하는 것보다는 占有와 利用과의 상호관계를 기준으로 山場柴草를 개인이 독점하여 利用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共同利用하는 것을 의미한다”(안동섭, 윗글, p.36)고 이해하는 안동섭의 견해와 같이한다. 그 이유는 촌락민이 다른 촌락으로 이주할 경우 공동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는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2) 朝鮮後期 山林所有關係

조선후기의 모든 산림소유권은 擬制로는 모두 國有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分化하였다. 國有林은 王室의 財政充當과 船舶製造用 原資材 등을 생산하기 위해 특별히 선정하여 禁養한 지역인 封山(禁山), 牧場, 講武場, 官用柴場 등과 생산력의 미발달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奧地國有林<sup>5)</sup>으로 구분할 수 있다. 國有林은 林籍調査事業의 결과 “관리기관이 있는 국유림”으로 약 103만정부가 조사(齊藤晉作a, 1933, p.53) 되어 어느 정도 개략적인 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奧地國有林의 경우, 林籍調査事業의 결과 “관리기관이 없는 국유림”이 약 727만정부로 추산되었으나 山下主民과 관계있는 緣故林이

3) 京畿公私田 四標內有荒閑地 聽民樵牧漁獵 禁者理罪 (高麗史 食貨志 科田法) 山林川澤 與民共利 近來權勢之家 自占爲私擅 禁樵牧以爲民害 仰憲司禁約違者治罪(高麗史 卷85 刑法2 禁令) 私占柴草場者並杖八十(經國大典 卷之五 刑典 禁制條)

4) 山林川澤與民共之而有闕禁(孟子 梁惠王章句上)  
5) 조선헌조의 관리권이 미치지 않는 분명 擬制로나마 조선헌조의 산림이라는 뜻에서 ‘奧地國有林’이라 명칭하였다. 이러한 산림을 일제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뜻에 ‘無主公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조선헌조의 국가적 소유를捨象시키는 용어이므로 이 논문에서 국유오지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면적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다음으로 私有林의 경우는 왕족 및 세력있는 양반들에 의해 점유된 산림이었다(私養林). 그 起源에 대해서는 성종·연산군 이후의 왕족과 권세가들의 折給과 묘지설정을 빙자한 대면적 산림 점유를 들 수 있으며(남원우, 1988) 그 광범위한 산림광점의 확산은 조선후기 山訟의 증가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김선경, 1993).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의 사유림이 존재하였는가를 추측하기란 쉽지 않은데, 단지 舊森林法(1908)의 地籍申告條項을 통해 신고된 면적이 220만정보(朝鮮總督府, 1936, p.9)라는 것과 임야조사사업 결과 민유로 추가 인정된 면적이 136만정보(윗글, p.9)라는 것을 볼 때 조선후기에는 山林川澤與民共之라는 산림공유원칙이 단지 의제로만 기능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더불어 조선시대의 산림관리 방식인 禁養이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제가 한국의 山林所有權을 재편하면서 永年禁養한 산림에 대해서는 私有를 認定했다는 점에서, 자기 소유라고 확증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私有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基準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朝鮮後期에도 禁養이 山林의 占有權<sup>6)</sup>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

준이 되었다(김선경, 1993, pp.509~512). 그러므로 禁養이란 산림을 보호하고 기른다는 의미 이상인 排他的 使用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즉, 禁養은 적극적인 자원조성이란 의미에서 단순히 주변 산림을 이용하는 慣習的인 山林利用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天然林을 利用하는 村落共有林과 禁養林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기에 조사자의 恣意性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다.

3) 村落共有林의 성격-松契林을 중심으로

總有的 권리가 있다는 측면과 보통 마을 단위가 권리주체라는 측면에서 松契林과 村落共有林은 유사한 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村落共有林이 발전된 형태로 松契林을 정의하고<sup>7)</sup>, 松契林의 성격을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지금까지 알려진 (禁)松契節目을 설립연도, 설립주체, 설립목적, 재정마련방법, 처벌규정, 관리방법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다음의 중요한 몇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1) 契의 이름에도 보이듯이 소나무를 대상으로 하여 마을 마다의 계를 조직했다는 점, 2) 溫井洞과 松明洞과 같이 契의 설립주체가 洞인 경우, 洞民 모두가 계원으로 가입했다는 것-즉, 다시말해서 무조건적인 가입이었다는 점, 3) 마을회의를 통해 처벌 및 관리방안을

<표 2> 松契의 設立 및 管理

구 분	설립연도	설립주체	설립목적	재정마련	처벌규정	관 리
溫井洞 <sup>1)</sup>	嘉慶24年	溫井洞	禁松, 排他的使用	?	本洞 : 벌금 타동 : 관에 호출	?
松明洞 <sup>2)</sup>	1763年	3개 마을	禁松	벼한말	계원 : 30대 이의 : 고발	봄, 가을상의 有司 임명
禁松契座目 <sup>3)</sup>	戊戌年	?	禁松	?	벼	巡山
松契節目 <sup>4)</sup>	甲寅年	?	?	1전씩	?	?
松契完議 <sup>5)</sup>	壬戌年	?	禁松	?	벼와 贖錢	봄, 가을상의
禁松契立議 <sup>6)</sup>	?	?	禁松	?	벼와 贖錢	巡山

주<sup>1)</sup> : 溫井洞禁松節目(嘉慶24年 乙卯 九月)

주<sup>3)</sup> : 임경빈, 1993, 우리 숲의 문화, p.147, 광림공사.

주<sup>5)</sup> : 서울대학교 奎章閣 소장(古 5129-30)

주<sup>2)</sup> : 松明洞禁松契帖(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주<sup>4)</sup> : 서울대학교 奎章閣 소장(古 5129-54)

주<sup>6)</sup> :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奎 27029)

6) 조선후기 "무릇 閒曠地는 起耕者를 주인으로 한다"(大典會通, 戶典 田宅條)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開墾權을 통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禁養權은 조선 후기 산림점유, 나아가 산림소유권 획득의 주요한 원천으로 여겨진다.

7) 松契林이 明示的인 規約를 바탕으로 관리하는 산림인데 반해 村落共有林은 權利關係와 明確한 規約를 설정하지 않은 산림까지를 포괄한 전체 總有林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정했다는 점, 4) 처벌의 방법은 주로 벌금형이 주었으며 體刑 역시 贖錢을 통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조선후기의 상품화폐경제의 침투가 광범위하였다는 것을 보여줌, 5) 마을 공유의 占有權이 당시 광범위하게 인정받아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의 무단 침입의 경우 관아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는 다시 말해 松契林(촌락 공유림)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6) 山林保護에 관한 處罰規定이 있었다는 점, 7) 山林管理의 방식이 계원의 巡山이나 有司를 두고 직접적인 보호가 이루어졌다는 점, 8) 살아있는 소나무는 절대 벨 수 없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禁)松契가 산을 둘러싼 洞 또는 마을단위의 공동점유, 공동이용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소나무를 매개로 하여 철저한 산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禁)松契는 언제,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 시점에 대해서는契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18세기를 전후하여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서의 송계절목이 立議된 시기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또한 안정복이 [臨官政要](1738)에서 里洞별로 자율적인 禁養體制(松契)를 조직하자는 [禁松作契節目]을 제안한 시기도 역시 18세기 초기였다.

다음으로 松契는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松契의 成立動機에 대해 이만우는 “正祖年間을 전후하여 각지에서는 인근의 삼림중 아직 사정되지 않은 것을 촌락공유림으로 확보하고 이에 대한 공동보호와 공동이용을 하기 위한 조직체인 소위 松契 또는 禁松契를 촌락단위로 조직하여 권력층의 점탈로 인하여 축소되어가는 공산의 유지보호에 진력함으로써 農用入會林保存에 공헌하였다”(이만우, 1974, p.41)고 하여 권세가들의 산림점탈에 대항하기 위해 서민들이 당시 크게 발달하고 있던契의 형식을 빌어 성립된 것이 松契라고 보고 있다. 18세기 왕족과 세력가들에 의한 산림점유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자치적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데는 논자도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禁松契의 設立이라는 것은 禁松契에 山林禁養을 위입하는 것이 되어 또 다른 산림점유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었기에 서민뿐만 아니라 兩班들이 주도하여 松契를 만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민정자료 <先覺追錄>을 보면 兩班 및 武斷鄉曲之輩들이 계를 만

들어 인민이 거하는 산록 근처에서의 이용을 금지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民狀草概冊, 윤5월29일, 김선경, 앞글, p.505에서 재인용). 또한 권세가가 아니고서는 힘든 농사일을 소홀히 한 채 山直을 두고 산림을 禁養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禁)松契의 주체는 순수하게 松契林을 지키고자 자치적으로 만든 농민들 중심의 조직이 있는 반면 지방 권세가들의 산림사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양반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경우도 있어 조직주체 역시 다양하였다. 이와 더불어 ‘松契’라는 명칭과 제조직의 설립목적은 촌락 주변의 소나무를 금양한다는 산림보호를 내세운 것은, 관청이나 주변 촌락으로부터 배타적인 촌락공유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선전기부터 소나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松政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기에 선택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송계림은 어떻게 관리되었을까? 日帝의 朝鮮強占 이후에 시행된 慣習調査의 수행과정에서 “노목이 생육하여 창창했던 지방은 으레 송계가 발달했던 것은 명백한 것이다”(猪谷善一, 1928, p.28)라는 언급으로부터 송계의 산림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松契가 과연 전국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겠는가라는 문제와 山下主民들의 일반적인 산림관리 방식이었겠는가라는 문제이다. 松契의 設立은 매우 조직적인 農用利用林의 확보였으나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村落共用林은 촌락 단위의 非明示의인 權利關係(이 마을 산림은 주변 마을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를 바탕으로 관습에 의해 이용되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松契는 封建의 山林制度의 近代의 再編過程에서 林業主體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즉, “안정복의 제의처럼 촌락마다 송계를 조직시켰더라면 촌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 禁養과 연료채취가 균형을 이루는 林野制度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을 것”(김성호 등, 1990, p.27)이라는 가능성과,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近代의 山林所有關係의 재편 방향중 村落共有林의 관리주체인 村落을 소유주체로서 인정하는 방향을 상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村落共有林과 特殊地役林이 과연 日帝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어 나갔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日帝强占期 村落共有林과 特殊地役林의 解體過程

1) 朝鮮特別總督森林讓與令(1926) 공포 이전의 村落共有林과 特殊地役林의 處理

日帝에 의한 한국산림소유제도의 재편은 1908년 법률 제1호 森林法의 公布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이 森林法중에는 조선시대까지의 전통적인 산림이용관계인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齊藤音作은 森林令制定에 앞서 森林法(1908)에서 “국유임야중 과반을 점하는 公山の 대부분에 대해서는 종래 오랫동안 入會 또는 이와 유사한 慣行”을 인정하지 않음은 조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고 森林法을 완화개정하고 入會權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齊藤音作b, 1933, pp.198~199).

이를 반영하여 森林令(1911)에서는 “國有森林에 入會의 慣行이 있는 地元住民은 慣行에 따라 그 산림의 부산물을 채취하거나 또는 이에 방목을 할 수 있다”(8조)고 하여 朝鮮民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森林令施行細則(總令 제74호)에서는 관습적인 산림이용, 즉 ‘入會慣行’을 “지원주민의 全部 또는 大部分이 國有森林의 一定한 區域을 한정하여 永年 部落用 또는 自家用으로 제공할 수 있는 産物의 採取 또는 放牧의 用途로 제공했던 慣行을 말한다”(제35조)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지방에서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을 갖는 山下主民에게 일정한 구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入會慣行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특히, “入會慣行이 이루어지는 국유산림은 公山對 入會地가 있고 國有地對 入會地가 있는데,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總督府는 森林令의 규정과 달리 “국유산림산야에 대해서는 入會慣行을 인정하지 말 것과 만약 이로 인해 地元住民에게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삼림령 제10조 제1항에 의해 보호를 명하여 그 산물의 보수로서 채취할 수 있도록 취급해야 한다”고 政務總監의 回答(森林令實施ニ關スル質疑ノ件<1912. 1, 關通牒 制10號>)을 내렸다.

또한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地元住民도 入會慣行을 인정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소위 地元住民이라 함은 당해 임야의 부근에 거주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에 인접하여 거주할 필요는 없다”(森林令第8條ノ地元住民ノ解釋ニ關スル件<1912.7, 官通牒 第1號>)고 하여 행정구역

을 달리해도 山下 부근에 거주하기만 한다면 지원주민으로 보고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을 인정하였다.

즉, 일제가 인정하는 관습적인 산림이용(入會慣行)이란 법률적으로는 國有森林山野 중 公山내의 入會地만을 인정하고 지원주민은 관할구역을 달리하여도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인정하였던 것이다. 관습적인 산림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는 國有森林未墾地 및 森林産物特別處分令(1912.8.14, 勅令 第6號)에 의해 제시되었다. 먼저 제1조 제4항의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거 特別한 緣故있는 森林을 그 緣故者에 매각할 때” 隨意契約에 따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여기서 特別한 緣故있는 森林은 同處分令에 의한 重要産物緣故者·製造業者·木材業者 資格에 관한 件(1912.9, 府令 第10號)에 8가지로 구분되었는데, 그중 4항에 “入會慣行있는 森林山野에 있어서 그 入會慣行을 갖는 者”로 규정하여 앞서의 권리를 관습적인 산림이용을 하는 山下主民에게 부여하였던 것이다. 또한 ‘特別한 緣故있는 森林’에 대해서는 국유산림을 무료로 貸付할 수 있었고(제3조 2항) 국유산림의 매각 역시 隨意契約에 따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제4조 3항). 森林令과 國有森林未墾地 및 森林産物特別處分令에 의하면 분명 조선인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보장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법적 인정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산림이용에 큰 제약이 받게 되었다. 과거 오랫동안 禁養을 해온 산림이나 촌락공유림 및 특수지역림은 확실한 官文記나 規約이 없는 경우 국유화되어 그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제의 강압적인 국유림창출과정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한일간의 민족간 갈등과 한국인의 저항에 대해서는 이미 강영심의 선행연구(강영심, 1998)에서 자세히 다루었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森林令에는 “永年禁養했던 國有森林은 제7조의 대부분을 했던 것으로 간주”(제29조)한다고 하였으며 永年禁養했던 山林으로 인정받으면 貸付料를 내지 않고(森林令施行規則 第46條) 成功讓與를 받을 수 있었다. 즉, 자신의 소유라는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山林所有權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總督府로부터 永年禁養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이 조항으로 인

해 朝鮮民들은 永年禁養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2만건 이상의 많은 出願을 했으며<sup>8)</sup> 總督府 역시 “永年禁養의 實否認定은 그 得失의 관계에 커다란 것으로서 극히 신중한 조사를 요하는 것”(永年禁養ノ實否認定ニ關スル件<1911.10.20, 官通牒 第300號)이라 인정하였다. 永年禁養의 適否判定에 대해 忠清北道長官이 農商工部長官에게 보낸 질의는 크게 1) 天然林의 禁養에 있어 自然에 방치한 것과 永年禁養했다는 것을 林況으로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는가, 2) 永年樹木의 벌채를 금하고 양호하게 산림의 상태를 보전하다가 지금 불완전할지라도 산림이라고 인정해야만 하는 상태라면 이를 禁養이라고 인정해야 하는가, 3) 기준으로 林齡, 林木度는 어떠한가, 4) 林況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벌채를 금하고 자기만 柴草採取地로서 매년 채취한 땅을 永年禁養이라 할 수 있는가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農商工部長官은 1)에 대해서는 松契 또는 유사한 規約 등 확실한 증거있는 것에 한하여 禁養이라 인정하고, 2) 및 3)에 ① 舊森林法 시행 전 전부 또는 일부의 播種 또는 植樹를 행한 것, ② 播種을 행하지 않고 단순히 禁養한 것으로서 森林令施行 前 평균수령 10년 이상에 달한 것에 대해서 평균임목도 3/10 이상인 것을 永年禁養이라 인정하고, 4)에 대해서는 永年禁養이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松契 또는 유사한 規約 등으로 양여받은 산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양여전수당 양여면적이 2.6정보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대부분 촌락과 인접한 중규모 이상의 산림으로 이루어진 송계림으로 보기에는 너무 소면적이기 때문이다.

이 通牒을 통해 1) 松契와 같은 확실한 조직이 관리했다는 증거가 있거나, 2) 植樹 또는 播種과 같은 적극적인 山林資源造成을 하였거나 아니면 단순히 禁養하여 10년 이상이 지난 산림의 평균 임목도가 3/10 이상이면 禁養權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배타적인 시초채취와 같은 이용은 永年禁養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관습적인 산림이용은 私有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總督府의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었다. 또한 林齡이나 平均林木度에서 1년이나 1/10의 차이로 永年禁養을 인정받거나 받지 못

하는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각 지역의 담당자들의 恣意的인 判斷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森林令이 제정된 이후 실제 森林山野 및 未墾地의 國有私有區分을 위한 9가지 標準이 만들어졌으며, 이 표준은 ‘韓國林野整理에 관한 意見書’(齊藤音作a, 1933, pp.59~81)에서 제시한 것과 거의 일치하고 나아가 山林所有權을 확정짓는 朝鮮林野調査令에서 채택된 구분표준이었다. 결국 조선 산림에 대한 국유·사유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이 조사에서도 국유임야에 대한 관습적인 산림이용은 緣故있는 國有林野를 나누는 6개항목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朝鮮林野調査令施行細則의 緣故있는 國有林野 조항을 보면, 朝鮮林野調査令 제10조, 同施行手續의 국유, 민유구분과 차이를 보여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調査者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았다. 예를 들어 朝鮮林野調査令 제10조에는 “1908년 법률 제1호 森林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의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유로 귀속했던 임야는 私有者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로서 이를 査定한다”고 하였으나 同規則에서는 緣故있는 國有林野로 정하였다(2항). 또한 永年樹木을 禁養했던 것 역시 同施行手續에는 民有의 구분표준으로 인정하였으나 同規則에서는 緣故있는 國有林野로 정하였던 것이다(4항). 이러한 혼란스러운 法適用은 임야조사사업의 所有權査定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不服申立)이 土地調査事業과 달리 급증했던 원천적인 원인이 되었다. 결국 林野調査事業까지도 조선인의 總有와 特殊地役權이 私有林이나 公有林으로 해체·전환되지 않은 채 緣故있는 國有林野의 한 형태로 일관 國有로 査定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으로 村落共有林의 處理와 관계되는 面有林 또는 部落有林의 조성을 들 수 있다. 朝鮮總督府는 部落單位의 山林所有權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面有林 역시 模範林의 형태로 최고면적 20정보 이내로 한정하였다. 먼저 政務總監이 각도장관에게 보낸 通牒인 “部落有財産整理에 관한 件”(1913.5, 官通牒 第42號)을 보면 “지방에 따라 里洞内の 小部落에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바 右는 그 명의로서 증명을 받을 수 없도록 결정됨에 따라 귀 관내에서 右等の 재산이 있다면 이때 관계 부락민을 懇諭하여 面 또는 里洞의 財産에 편입정리하도록” 조치하였다. 즉, 당시 部落를 法人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락단위의 공동소유, 즉 總有를

8) 1910년부터 1939년까지 永年禁養에 대한 讓與件數는 21,200건, 讓與面積은 55,138정보였다(朝鮮林業史(상권), 앞글, pp.554-555).

所有權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그 이듬해 政務總監은 다시 “面的 기본재산조성 및 模範林設置를 위한 國有林野 讓與의 件”(1914.3.10, 官通牒 第84號)이라는 通牒을 發하여 “面的 基本財産造成은 森林令 第11조의 공익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판단하고 단지 模範林의 형식을 빌려 “植林의 實行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 면적은 植林上 模範을 보이기엔 足한 範圍를 초과하지 말 것, 불요존치 임야에 한정할 것”으로 정하고 같은 해 다시 “面模範林設置를 위한 國有林野 讓與의 件”(1914.5.6, 官通牒 第169號)을 發하여 모범림 면적은 “통례 10정보 내외이고 1면에 대해 20정보를 최대”로 한다고 정하였다<sup>9)</sup>. 즉, 총독부의 이러한 조치로 촌락단위의 대부분의 村落共有林은 財産權을 형성할 수 없었고 또한 대면적의 面有林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기간동안 총독부는 촌락단위의 村落共有林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관습적인 산림이용을 바탕으로 緣故있는 國有山林으로 신고를 유도했던 것이다. 이것은 다음에 살펴 볼 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을 통해 실제 처분된 緣故있는 國有林野가 대부분 朝鮮民 個人에게 처분되었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에서의 村落共有林과 特殊地役林의 解體過程

지금까지 日帝가 朝鮮에서의 國有山林에 대한 慣習의인 山林利用權을 認定하면서도 특별하게 취급하여 처분하기 보다는 緣故있는 國有林野에 포함시켜 처분하려 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林野調査事業의 1차 사정시기까지는 村落共有林이나 特殊地役林이 사유림이나 공유림으로 처분· 전환되지는 않았다. 林野調査事業에서는 국유산림을 사정할 때, 1) 緣故者를 갖지 않는 林野, 2) 緣故者를 갖는 林野로 나누고 2)를 다시 ‘入會慣行을 갖는 林野’와 ‘入會慣行 이외의 緣故者를 갖는 林野’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朝鮮山林

會, 1935, 朝鮮林務提要, p.1126). 이것은 朝鮮總督府가 特殊地役權과 그 외의 緣故있는 山林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緣故있는 國有林野는 3·1운동 후 조선인의 민족해방투쟁이 조직화되고 緣故있는 國有林野에 대한 불만이 더해지면서 총독부에게 있어 “緣故林野는 그 소재상황에 비추어 나라의 경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각 또는 대부함은 그 수익재산으로서의 가치에서 보아도 장차 또 민중사상의 관계에서 보아도 得策이 없고 이를 현상대로 방임한다면 더욱 민중의 반감을 일으켜 민중 歎願을 많게 하는 반면 林相은 더욱 荒廢하여 임업장려상 커다란 장애”<sup>10)</sup>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물론 조선인의 怨嗟의 원인에는 總督府의 혼란스러운 所有區分標準과 실제 적용상 조사자의 恣意的인 처리에 그 원인이 있었다. 그렇다면 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의 결과 總有와 特殊地役權과 관련이 있는 緣故있는 國有林野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분되었을까? 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令(이하 ‘讓與令’이라 줄여 말함)에서는 처분할 緣故있는 山林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분하였다(1926.4. 制令 第7號 第2條. 1) 古記 또는 歷史가 증명하는 바에 의거 사찰에 연고 있는 삼림에 있어서는 그 사찰, 2) 1908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의 신고를 하지 않아 국유로 귀속했던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3) 1908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전 적법하게 점유했던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전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면내의 부락일 때는 그 府面을 특별연고자로 간주하였다.

이 조사에 의해 緣故山林으로 인정된 것은 필지수 1,044,771필지, 면적 2,779,826정보였다. 그렇다면 이 조사를 통해 村落共有林과 特殊地役林이 어떻게 해체되었는가를 살펴보자. 전체 처분총수는 필지수 1,165,705필지, 면적 3,340,437정보로 이중 讓與가 89.6%, 貸付가 3.1%, 不許可 및 其他가 7.3%를 차지하여 讓與와 貸付의 형태로 92.7%가 처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분된 산림중 林野調査事業내 緣故있는 國有林野로

9) 실제 1939년까지 도모범림 양여면적은 98건 144,345정보, 면모범림 양여면적은 2535건 26,122정보, 학교림 양여면적은 1,359건 12,370정보, 영년금양 양여면적은 21,200건 55,138정보, 공동묘지 양여면적은 16,731건 10,320정보, 기타 양여면적은 195건 18,159정보로 전체 18,159건에 266,454정보가 양여되었다(朝鮮總督府, 1940, 朝鮮의 林業, pp.35-36). 이중 면모범림은 겨우 26,122정보에 불과하였다.

10) 朝鮮林野調査事業의 불복신립사건중 연고림에 관한 분쟁이 전체 불복신립사건의 52%에 달하였다(朝鮮總督府, 1936, 朝鮮總督府林野調査查業報告, pp.74-75).



사정하였던 산림에서 필지수 87.2%, 면적 88.7%가 처분되었고 다음으로 土地調査事業중 介在된 國有林野에서 필지수 11.3%, 면적 3.9%가 처분되었다. 그리고 본 장에서 다루고 있는 '讓與令'에 의해 양여된 산림은 私人이 88.6%인 2,463,555정보, 府面이 10.8%인 299,050정보였다(표 3 참조). 이중 府面은 앞서 '讓與令' 예외 조항에서 보았듯이 村落共有林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緣故山林을 세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과연 어떤 緣故에 얼마나 많은 산림이 讓與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세가지 형태의 연고산림중 제3형태가 99.6%를 차지하였다. 즉, "1908년 법률 제1호 森林法 시행전 적법하게 점유했던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占有者 또는 그 相續人"이 이 양여사업을 통해 사유로 해체·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特別緣故山林 處分 實積

면적단위 : 정보

區 別		林野調査濟 緣故林野		同上 無緣故 國有林野		林調·土調未濟 林野						
						土地調査濟 國有林野		林野調査濟 林 野		計		
		筆數	面積	筆數	面積	筆數	面積	筆數	面積	筆數	面積	
處 分 總 數	讓 與	946,569	2,703,520	878	5,950	97,302	70,310	22	45	1,044,771	2,779,826	
	貸 付	35,530	98,080	5	19	409	491	-	-	35,944	98,591	
	不許可 計	34,957	159,760	13,814	266,976	34,037	26,517	2,182	8,764	84,990	462,019	
		1,017,056	2,961,360	14,697	272,946	131,748	97,320	2,204	8,810	1,165,705	3,340,437	
讓 與 者 別	主 管 山 林 部	946,567	2,703,520	878	5,950	97,299	70,308	22	45	1,044,766	2,778,824	
	其 他	2	0	-	-	3	2	-	-	5	2	
	計	946,569	2,703,520	878	5,950	97,302	70,310	22	45	1,044,771	2,779,826	
	被 讓 與 者 別	私 人	905,476	2,397,398	774	1,791	86,403	64,335	15	29	992,668	2,463,555
	寺 刹	611	8,548	9	2,565	27	13	-	-	647	11,128	
	府 面	39,734	291,646	91	1,589	10,668	5,799	7	15	50,500	299,050	
	其 他	748	5,926	4	4	204	162	-	-	956	6,092	
	計	40,482	297,572	95	1,593	10,872	5,961	7	15	51,456	305,143	
		946,569	2,703,520	878	5,950	97,302	70,310	22	45	1,044,771	2,779,826	

岡 衛治, 1945, 朝鮮林業史(上), 박태식소장 축소사진판, pp.592~593.

<표 4> 緣故種類別, 面積別 特別緣故山林 處分實積

면적단위 : 정보

區 別		林野調査濟 緣故林野		同上 無緣故 國有林野		林調·土調未濟 林野				計	
						土地調査濟 國有林野		林野調査濟 林 野			
		筆數	面積	筆數	面積	筆數	面積	筆數	面積	筆數	面積
緣 故 該 當 別	緣 第1號	228	6,496	5	389	11	6	-	-	244	6,890
	緣 第2號	95	414	3	2,028	1,870	1,499	-	-	1,968	3,942
	緣 第3號 計	946,246	2,696,612	870	3,532	95,421	68,804	22	45	1,042,559	2,768,994
		946,569	2,703,520	878	5,950	97,302	70,310	22	45	1,044,771	2,779,826
種 別 面 積 別	1정보 미만	381,018	175,663	485	212	75,471	25,006	9	5	456,983	200,888
	5정보 미만	436,231	1,004,412	261	503	20,605	35,903	12	33	457,113	1,040,853
	10정보 미만	83,801	579,646	52	351	1,034	6,511	1	6	84,888	586,515
	50정보 미만	43,460	759,581	60	1,341	186	2,705	-	-	43,706	763,628
	백정보 미만	1,607	106,966	13	903	1	82	-	-	1,621	107,952
	백정보 이상	452	77,250	7	2,637	1	101	-	-	460	79,989
	計	946,569	2,703,520	878	5,950	97,302	70,310	22	45	1,044,771	2,779,826

岡 衛治, 1945, 朝鮮林業史(上), 박태식소장 축소사진판, pp.593~594.

또한 1908년 구삼림법 시행전 적법하게 점유했던 산림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는 묘지설정이었다. 이 사업으로 양여된 산림은 평균 2.7ha/필지수로, 묘지로 설정된 주위 산림을 소면적으로 양여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된 면적을 보면 5정보 미만이 44.6%, 50정보 미만이 48.6%, 50정보 이상인 6.8%를 나타내 대부분이 개인위주의 소면적 양여처분을 받았으며 예외로 50정보 이상의 187,941정보는 村落共有林이 해체된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을 통해 朝鮮의 緣故있는 國有林野가 日本人 및 몇몇 조선인에게 처분되었고 또한 國有林과 다른없는 府邑面有林으로 처리되었다는 논거(강영심, 1983, pp.93~94)는 앞서의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朝鮮林野調查事業을 통해 緣故있는 國有林野로 査定된 제2종 不要存國有林을 비롯한 特別緣故森林중 99.6%가 舊森林法 이전부터 적법하게 점유했던 산림의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양여를 받아 조선인 개개인에게 처분되었다는 것은 분명 村落共有林의 해체와 朝鮮民 個人爲主의 處分이었던 것이다.

### 결 론

최근의 土地調查事業에 대한 實證的인 研究를 통해 農地에 대해서는 지주의 소유권을 등기제도의 도입과 함께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배영순, 1988). 그러나 農地와 달리 山林은 山林川澤與民共之라는 共有制度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고 地稅의 부과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습적인 산림이용에 더욱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었다. 즉, 지주중심의 원소유자에 기반한 土地調查事業과 달리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이라는 불완전한 권리를 지닌 산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林野調查事業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에 앞서 朝鮮林野調查事業에서는 緣故權이라는 폭넓은 개념 안에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을 축소시켜 緣故있는 國有林野로 사정하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1926년에는 讓與권이 제정되어 林野調查事業 결과 査定된 緣故있는 國有林 3,375,663정보중 81.4%인 2,779,798정보가 사유로 인정받았으며 件數에 있어서는 93.9%가 私有로 인정받았다. 特別緣故山林중 私인이 인정받은 면적은 2,463,555정보로

전체 양여면적의 88.6%를 차지하였고 府面이 299,050정보로 12.1%를 차지하였다. 또한 '特別緣故森林'의 세가지 형태중 "1908년 森林法 시행전 적법하게 점유한 산림"이 2,768,994정보였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 1) 林野調查事業의 결과 緣故있는 國有林野라고 사정한 산림이 거의 그대로 緣故權을 인정받았다, 2) 村落共有林과 特殊地役林이 私有化하거나 府面有林으로 해체·전환되었다, 3) 舊森林法 시행전 적법하게 점유한 산림, 즉 村落共有林과 特殊地役林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特別緣故森林'의 세 번째 형태가 村落共有林과 特殊地役林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문서상 확증이 있는 산림과 永年禁養된 산림은 森林令 이후 이미 民有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는 측면과 '入會權'을 林野調查事業의 民有林査定基準에서 제외했다는 측면에서 舊森林法 시행전 적법하게 점유된 산림은 관습적인 이용림, 즉 村落共有林과 特殊地役林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舊森林法 제19조에 의해 지적신고를 한 220만정보를 제외한 약 1,400만정보의 산림이 국유림으로 편입되었던 것이 1934년 永年禁養의 인정과 緣故權을 인정한 끝에 1,100만정보의 民有林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조선후기까지의 村落共有林 중 林籍을 신고할 때 記名申告하여 査定받은 약간의 산림을 제외한 대부분이 私有林으로 전환·해체되거나 府面과 같은 '公有林'으로 전환·해체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유권이 共有(緣故 포함)에서 私有 또는 公有로 전환되었고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핵심내용인 집합체로서의 공동이용권이 해체된 것이다. 물론 森林令의 법적 조항으로 入會權이나 入會慣行이 존재하고 특수지역권이 완전히 해체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련의 임야정리사업으로 형성된 배타적인 소유권으로 인해 그 권리가 축소되고 위협받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일제강점기 초반에 대량 창출된 국유림은 朝鮮總督府의 식민재정 확보와 정치·군사적 사활이 걸린 압록강, 두만강유역을 포함한 要存國有林에 한정되고 나머지 국유림은 사유림, 공유림으로 처분되어 현재의 남한 산림소유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 인용문헌

1. 姜英心, 1983. 일제하의 [朝鮮林野調査事業]에 관한 연구. 이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6pp.
2. 姜英心, 1998. 日帝의 한국삼림수탈과 한국인의 저항. 이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02pp.
3. 權寧國 외 6인, 1996. 譯註 [高麗史] 食貨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典資料叢書 96-3. 671pp.
4. 김선경, 1993. 조선후기 山訟과 산림 소유권의 실태. 동방학지, 77·78·79합본. pp.87~126.
5. 김성호·이두순·박석두·박찬남, 1990. 산지소유와 묘지제도 연구. 농경연구보고 226. 247pp.
6. 남원우, 1988. 16세기 '山林川澤'의 折受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7pp.
7. 孟子, 1984. 保景文化社, 311pp.
8. 金會漢, 1981. 民法講義II, 物權法, 博英社.
9. 배영순, 1988. 韓末·日帝初期의 土地調査와 地稅改正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57pp.
10. 산림청, 1997. 임업통계연보.
11. 松계楔完議 (규장각, 古 5129-30)
12. 松契節目 (규장각, 古 5129-54)
13. 松契節目 (규장각, 奎 123229)
14. 松禁楔立議 (규장각, 奎 27029)
15. 松明洞禁松契帖 (국립중앙도서관)
16. 신용하, 1990.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와 농촌 사회경제의 변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1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17. 安東燮, 1960. 韓國入會權에 관한 小考.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1pp.
18. 溫井洞松禁節目
19. 李萬雨, 1974. 李朝時代의 林地制度에 관한 研究. 한국임학회지 22:19~48.
20. 李萬雨, 1983. 마을共同所有林의 利用 및 管理實態 調査研究. 한국임학회지 61:60-68.
21. 임경빈, 1993. 莞島松禁節目. 우리 숲의 문화. 광림공사, 309pp.
22. 韓祐祐 외 4인, 譯註 經國大典, 199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國譯叢書 86-1. 555pp.
23. 岡衛治, 朝鮮林業史(上,下). 朝鮮山林會. 朴泰植所藏 縮小寫真版.
24. 權寧旭, 1965. 朝鮮における日本帝國主義の植民地的山林政策. 歷史學研究. 第297輯, pp.1~17.
25. 猪谷善一, 1928. 朝鮮經濟史.
26. 齊藤音作a, 1933. 朝鮮林業逸誌: 韓國政府時代の林籍調査事業. 朝鮮山林會. pp.39~81.
27. 齊藤音作b, 1933. 朝鮮林業逸誌: 朝鮮森林令及附屬法令制定の事情. pp.196~220.
28. 朝鮮山林會. 朝鮮總督府校閱, 1935. 朝鮮林務提要. 1163pp.
29. 朝鮮總督府 農林局, 1936. 朝鮮林野調査事業報告. 332pp.